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노상익 의원외7명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0월 29일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

o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(2003. 10. 29) : 노상익 의원

나. 제정이유

o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,

o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권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 및 조경식재등을 강화하여 살기좋고 살고싶은 목포를 만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o 가설건축물(안 제8조)

・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(주차장, 화원, 체육시설)로 구조는 알루미늄새시로 30㎡ 이하의 건축물

o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의 구체화(안 제10조)

o 대지안의 조경 제외 건축물 확대(제 11조)

・상업지역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㎡ 이하인 건축물

・항만시설, 분뇨 및 쓰레기시설물 고물상

o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안 제60조) : 1.0배로 강화

o 공개공지의 확보(안 제62조 제2항 제1호)

・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" 생 략 "

4. 위원회 활동

가.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(2003. 10. 29)

o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답변

나.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(2003. 10. 30)

o 의견개진 및 심사의결

5. 토론요지

o 가설건축물 면적을 너무 완화하면 나중에 관리 문제와 난립이 되는등 문제점에 대하여?

·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, 관리문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면 되는 것임.

o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은?

· 건축사 협회, 학계, 집행부인 허가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한 것임.

o 전에는 조경식재와 관련하여 예치금 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지?

· 예치금 제도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령이 폐지된 관계로 조례로 만들수는 없음.

o 이행강제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조장하려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성은?

· 85㎡ 이하의 소규모 무허가건물로 대부분이 구도심의 노후건물을 개보수하다 발생하는 일로, 이행강제금이 너무많아 부담이 되고 있어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6. 심사결과 : 【수정가결】

현 행	수 정 안
제64조의2 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	**제64조의2 (이행강제금의 부과)**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5분의1의 ---------- --------.